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박경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9월 18일

발 의 자 : 박경희 의원

찬 성 자 : 서호성, 이진삼, 장숙이  
김순길, 김혜미, 이기돈  
이기수, 박상홍, 이경선  
윤선경, 김호진, 황춘하  
홍길식 의원 (13인)

## 1. 개정이유

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5일 더 앞당김으로써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심도 있는 입법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며,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,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토록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15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함(안 제18조 제3항)
-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현재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,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(안 제48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10일전”을 “15일전”으로 한다.

제48조 중 “사무국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)

현 행	개정안
<p><b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b>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<b>10일전</b>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b>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b>15일전</b> ----- -----</p>
<p><b>제48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</b>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최일시는 위원장이 <b>사무국장</b> 과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<b>제48조(의사일정과 개최일시)</b> ----- ----- <b>부위원장</b> -----</p>